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80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22.

다. 회 부 일 : 2025. 5.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 설>	○ 별표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 원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제24조²⁾에 따른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 기금 운용 수익금
용 도	◦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설치 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 리	◦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장애인등편의법개정안”이라 함)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상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출입구, 보도, 화장실, 점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 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블럭 등)를 의미함.³⁾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원, 공공건물, 공공주택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⁴⁾’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직전 조사인 2018년도(설치율 80.2%, 적정설치율 74.8%)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2018년도 및 2023년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단위: 개, %)

편의시설 종류 ⁵⁾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2018년	2023년	2018년	2023년	2018년	2023년	2018년	2023년	2018년	2023년
매개시설	3,791,947	2,153,933	3,116,303	2,011,613	82.2	93.4	2,950,482	1,812,782	77.8	84.2
내부시설	3,299,282	2,858,498	2,762,138	2,549,814	83.7	89.2	2,560,854	2,273,371	77.6	79.5
위생시설	1,489,298	1,109,576	1,055,077	942,438	70.8	84.9	959,091	817,632	64.4	73.7
안내시설	295,558	212,829	197,551	146,938	66.8	73.7	181,197	121,658	61.3	57.2
기타시설	124,179	80,304	93,540	69,730	75.3	86.9	84,392	60,444	68	75.3
비치용품	34,626	25,273	18,685	13,363	54.0	52.9	18,685	13,363	54	52.9
합 계	9,034,890	6,440,413	7,243,294	5,743,896	80.2	89.2	6,754,701	5,099,250	74.8	79.2

* 설치율 : 적정 또는 미흡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편의시설 단순 설치여부 의미)
 ** 적정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설치된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향상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및 ‘202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5) 매개시설 :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를 포함한 공간

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부 공간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한 공간

안내시설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를 포함한 공간

그런데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율에 대해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실제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이 대부분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3년 기준 전국 건축물 739만 1,084동 중 19만 991동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⁶⁾를 통해 ‘건축물의 규모, 수용 능력,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였는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 공간

6)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접근성(제9조)

20. 접근성에 대한 일반논평2(2014)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9와 세부 목표 11.2, 11.7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건축물의 규모, 수용 능력,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하여 국내법을 개정할 것
-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 (c)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중환차어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수를 늘리고, 버스 번호, 노선을 포함한 정보와 탑승 안내가 접근 가능한 형식이 되도록 보장하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공공장소와 환경을 개선할 것
- (d) 교육시설과 가정 모두에 있어, 그리고 공적·민간 웹사이트와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있어, 모든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것

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을 감안하였을 때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어렵고, 기금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일반회계를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임으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7)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7)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기금의 재원 중 ‘시정명령을 이행⁸⁾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의 경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과 연관성이 있으나, 해당 이행강제금징수액에 대한 최근 3년간 (2022년~2024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총 10개소, 1,412만원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기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단위: 개소,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부과 시설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3	4	3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6,318,950	2,984,000	4,820,950

자료: 보건복지부

아울러,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보조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으

8)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주관기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을 요청

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 및 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은 있다고 보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사업이 현재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편의시설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⁹⁾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9) ‘2002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2000년 조성 당시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으로 예상했던 편의시설설치 이행강제금이 재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출연금 30억원 외에 재원이 없어 2003년도 이후 기금의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금 잔액 8억 1,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기금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폐지됨.

[편의시설 관련 사업 현황(2025년)]

사업명	내용	예산(천원)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방안 연구	20,000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4,000
	편의증진기술위원회	5,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민관합동점검	6,500
	합계	35,500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교육 (민간교육, 온라인교육, 법령집 등 자료제작)	19,000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지원 (현장 업무 감독 및 지원)	3,000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시설기준 충족지원 및 적합성 심사대행 사업	40,000
	합계	62,000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증진 교육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건축사 실무교육)	30,000
	UD인식확산사업(공모전, 국제세미나, 전시/체험)	359,000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	4,280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	15,000
	합계	408,280
그 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등 관련 사업	BF인증 정보시스템 구축	44,600
	BF인증 사후관리(인증기관 합동사후관리)	40,400
	BF인증 제도개선 연구	30,0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운영기관 업무 수행	185,000
	합계	300,000
총 계		805,780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장애인등편의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u>

문의처
02)6788-5152